

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기초생활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인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”가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부칙에 의거 폐지되므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심의를 사하구 생활보장위원회로 개정이 필요함.

2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
-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부칙

3.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위원회를 변경 (안 제11조)
 - 기존 :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
 - 변경 : 사하구 생활보장위원회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일부개정 건은

-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”가 2004. 7. 31부로 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심의를 기존의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하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조정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

- 위원회 변경에 따른 기능페이지와 조문 등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적절한 수혜가 제공 되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사회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되며
- 특히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부칙에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근거 규정이 명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□ 위 조례 일부개정은 적법타당 하다고 사료됨